第269回國會
(定期會)

國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 5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7年11月15日(木)

場 所 國會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200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審査된案件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2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2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이미경・천영세・박성범・류근찬・한광원・장복심・정종복・김덕규・노현송・이계진・정청래・노웅래・이광재・김희선・윤원호・지병문・조배숙・강창일・오영식・권영길・우상호・박찬숙・강혜숙・김재윤・서재관・이광철・윤호중・강기정・김태홍・신기남・문병호・조정식・이낙연・최재천・이계안・주승용・유재건・변재일・우윤근・김낙순・염동연・조일현・이근식・강봉균・최용규・이종걸・장경수・양형일・우제창・우원식・진수희・김영주・노회찬・최순영・단병호・우제항・이강래・제종길・최규식・최규성 의원 발의) ····· 3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계속) ····· 5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계속) ····· 5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이미경・천영세・박성범・류근찬・한광원・장복심・정종복・김덕규・노현송・이계진・정청래・노웅래・이광재・김희선・윤원호・지병문・조배숙・강창일・오영식・권영길・우상호・박찬숙・강혜숙・김재윤・서재관・이광철・윤호중・강기정・김태홍・신기남・문병호・조정식・이낙연・최재천・이계안・주승용・유재건・변재일・우윤근・김낙순・염동연・조일현・이근식・강봉균・최용규・이종걸・장경수・양형일・우제창・우원식・진수희・김영주・노회찬・최순영・단병호・우제항・이강래・제종길・최규식・최규성 의원 발의)(계속) ····· 5
5. 200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
6.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임종석・심재철 위원 서면동의) ····· 6

(16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효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국회(정기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조기열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위원장 김효석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2건의 법률안은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국무위원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에 관한 법률체계 정비 차원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법률안은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간사를 대신해서 채일병 위원과 한나라당 소속 간사 심재철 위원이 서면동의로 제출하였으며, 서면동의자를 대표해서 채일병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일병 위원 대통합민주신당 채일병 위원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개시 전에 국무위원후보자를 지명하여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005년 7월 28일 공포된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대통령당선인은 그 임기 개시 전에 국무위원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당선인은 지명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를 위한 국회관계법상에 근거규정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과 국회법 등과의 법체계상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를 위한 국회관계법의 근거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법률개정안도 국회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 임기개시 전에 국무위원후보자를 지명하여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의 정의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위원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05분)

○위원장 김효석 그러면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정족수 관계로 나중에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존경하는 김효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동법 별표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근거법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교통시설특별회계 근거법인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동법 개정안은 기 발효 중인 법률을 추가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석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병옥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특별회계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근거법률을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혁신도시특별회계는 2007년 1월 11일 공포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재정법 별표에 신설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06년까지 한시적

으로 운용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그 시한을 2009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현행 국가재정법 별표에 누락되어 있는 근거법률인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안의 혁신도시특별회계와 교통시설특별회계는 그 근거법률에서 이미 설치가 결정된 것으로서 일반회계와 구분계리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여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특별회계에 해당하므로 특별회계 설치 근거규정인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그 근거법률을 동법 별표 1에 추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동법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근거법령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효석 이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일도 위원 예.

○위원장 김효석 배일도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배일도 위원 이게 지금 혁신도시특별회계, 혁신도시가 아니지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10개의 기업도시 건설, 그에 따르는 재정과 관련된 혁신도시특별회계 그 부분이 지금 국가재정법에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상은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다고 별표를 일일이 다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혁신도시 특별법은 통과됐는데……

○배일도 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금 그 지점을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지요, 교통시설특별회계는 1994년도에 설치됐잖아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배일도 위원 그래 가지고 중간에 한 번 연장을 했지요, 2006년도까지?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그렇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 날짜가 며칠입니까? 2006년도 10월 말까지였지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그게 12월이었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근거법이 없이 국가재정을 운용해 왔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국가재정법이 작년 9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작년 9월달까지는 연장하는 것이 확정이……

○배일도 위원 9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는 것이 확정이 안 됐어요. 12월까지 텀이 있잖아요, 텀이. 그 기간 동안에는 그냥 운용했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그렇습니다.

○배일도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얘기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그 부분은 입법미비로 생각합니다. 시한을 명시했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한 시한이 명시가 없이 폐지가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일도 위원 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처럼 온 국가에 대한 정말로 국가개조론이라고 이름 붙여도 될 정도로 예산이나 국민적 기대 또는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되는 그런 것들을 어떤 법으로 통과시킬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이후의 관련법들에 대해서 저는 치밀하게, 국회 운영위원회를 요청을 하든지 해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될 문제이지 이렇게, 지금 11월 아닙니까? 이렇게 처리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이 법안을 처리해야 될 기획예산처장관이 국민한테 대고 한 말씀 하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원래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당초 2006년 12월까지만 존속하기로 한 한시적인 특별회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한이 지나는 2007년부터는 교특회계를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국가재정법 제정안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2006년 12월달에 교특회계의 존속시한이 3년 연장하기로 의결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일도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석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지금 의결정족수가 한 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결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이미경·천영세·박성범·류근찬·한광원·장복심·정종복·김덕규·노현송·이계진·정청래·노웅래·이광재·김희선·윤원호·지병문·조배숙·강창일·오영식·권영길·우상호·박찬숙·강혜숙·김재윤·서재관·이광철·윤호중·강기정·김태홍·신기남·문병호·조정식·이낙연·최재천·이계안·주승용·유재건·변재일·우윤근·김낙순·염동연·조일현·이근식·강봉균·최용규·이종걸·장경수·양형일·우제창·우원식·진수희·김영주·노회찬·최순영·단병호·우제항·이강래·제종길·최규식·최규성 의원 발의)

(16시11분)

○위원장 김효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병옥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서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정부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한 기관으로서 자산규모와 자체수입비중 등을 고려할 때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공공기관의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바, 2007년 4월 11일 기획예산처 고시로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지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동 개정안의 개정요구 취지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확립하고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도 함께 고려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효석 이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질의를 하면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효석 예산처장관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의할 내용 있으면 하세요.

○배일도 위원 공공기관을 정부가 예산범주 속에서 400몇 개인가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298개 기관입니다.

○배일도 위원 298개 공공기관을 지금 관장을 해 나가시는데, 공공기관의 중요성에 비해서 정부의 관리체계를 보다 근본적으로 확보해 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다른 법률들과 충돌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임금 같은 경우는 노사 간에 자율결정을 한다, 노사가 자율로. 그래서 공공기관이 노사가 어떻게 합의를 해서 임금을 결정해 놓으면 공공기관 관리기본법상의 취지에 어긋나면 그 지침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그것을 수용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매년 공공기관에서는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지침과 어긋나는 부분과 관련된 사항들이 노사합의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 충돌이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협상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단체협상을 해서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인상률을 노사 간에 합의를 했으면 그 부분은 지켜지는데 다만 경영평가대상일 경우 평가에서 약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배일도 위원 그것은 자율인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보통 공공기관의 임금이나 근로조건 또 어떤 노동조건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법률적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지방자치제를 두고 있는데, 지방공기업도 그 안에 들어

가 있지 않습니까, 298개 안에?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지방공기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배일도 위원 완전히 제외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배일도 위원 법으로 국가기관만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배일도 위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기관의 독립성하고 이런 부분이 충돌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기본적으로 우선 298개 기관 중에서 기타공공기관……

○배일도 위원 준공공기관도 있잖아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197개 기타공공기관은 이런 가이드라인의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고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만 대상인데 그러한 기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법에 별도의 어떤 거버넌스와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기관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일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석 다른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지금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서 잠시 의결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계속)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계속)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이미경·천영세·박성범·류근찬·한광원·장복심·정종복·김덕규·노현송·이계진·정청래·노웅래·이광재·김희선·윤원호·지병문·조배숙·강창일·오영식·권영길·우상호·박찬숙·강혜숙·김재윤·서재관·이광철·윤호중·강기정·김태홍·신기남·문병호·조정식·이낙연·최재천·이계안·주승용·유재건·변재일·우윤근·김낙순·염동연·조일현·이근식·강봉균·최용규·이종걸·장경수·양형일·우제창·우원식·진수희·김영주·노회찬·최순영·단병호·우제항·이강래·제종길·최규식·최규성 의원 발의)(계속)

(16시18분)

○위원장 김효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 교섭단체에서 서면동의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각각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이미 통과된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을 국가재정법 별표에 반영하는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200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20분)

○위원장 김효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지난 11월 1일과 2일 양일간 실시한 국정감사에 대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초안을 중심으로 교섭단체 간사 간에 검토를 거쳐 위원님실에 사전에 송부하고 위원님들께서 다시 보내주신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의 200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교섭단체

간사 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임종석·심재철 위원 서면동의)

○위원장 김효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서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만료일을 2007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3월 31일로 변경하여 그 활동기간을 3개월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교섭단체 간사가 서면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훈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개특위 위원들, 우리 신당 쪽 위원들이 출석을 좀 해야…… 굳이 연장할 필요가 없어요.

○선병렬 위원 왜 안 나와?

○김정훈 위원 안 나오시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효석 알겠습니다. 그건 정치관계위에서 얘기……

○김종률 위원 왜 그 얘기를 여기서 해? 왜 그 얘기를 여기서 합니까?

○선병렬 위원 그건 그쪽 위원회에다 맡겨두는 거지.

○김정훈 위원 왜 안 나와.

○김종률 위원 다른 데서 얘기해야지.

○위원장 김효석 그건 우리 위원회 건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훈 위원 지금 연장을 하니까 얘기야.

○선병렬 위원 반대하지 그러면 왜 찬성해 놓고 그래?

○김정훈 위원 지금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연장은 부득이하게 하지만 이제 좀 출석을 잘해 달라 그 말입니다.

○김종률 위원 장소를 가려서 얘기를 해요.

○김정훈 위원 왜 그걸 가지고 인상을 빡빡 쓰고 그래?

○김종률 위원 인상을 누가 썼는데요?

○김정훈 위원 지금 내가 신당 의원들 잘 좀 나오게 하는 거야 당연히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여기 와서 얘기하냐니.

○위원장 김효석 알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국회의원 상호경조금 현황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상호경조규약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세비에서 매월 2만원씩을 갹출해 의원 상호경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상호경조규약 제5조에 의하면 국회사무총장은 매년 정기국회 말에 국회의원 상호경조에 관한 회계경리사항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2007년도 국회의원 상호경조금 현황보고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서면으로 보고되었으며 동 현황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영숙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효석	배일도	선병렬	심재철
정성호	지병문	채일병	최재성

○청가 위원(2인)

정진석 홍미영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안병옥
입법심의관	정재룡

○정부측 참석자

기획예산처

장관	장병완
정책홍보관리실장	이용걸
공공혁신본부장	강태혁
재정정책기획관	김용환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일병 의원 대표발의)

(2007. 10. 10 채일병·김홍업·이경숙·양형

일 · 노현송 · 김충환 · 박상돈 · 이근식 · 신학용 · 김효석 · 김용갑 · 김덕규 의원 발의)

10월 11일 회부됨

폭력날치기 국회의원(박병석) 사퇴 촉구 결의안

(2007. 10. 16 안상수 의원 외 128인 발의)

10월 16일 회부됨

국회 입법예고 규칙안

(2007. 11. 2 의장 제의)

11월 2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07. 11. 8 김춘진 · 이영호 · 채일병 · 한광원 · 최용규 · 한병도 · 장영달 · 최규식 · 신명 · 이광철 · 배일도 의원 발의)

11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모바일산업진흥법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

(2007. 11. 9 김태환 · 김석준 · 정희수 · 주호영 · 안택수 · 신상진 · 이인기 · 임인배 · 이상배 · 강재섭 · 서상기 · 김명주 · 이강두 · 문희 · 김애실 · 정진섭 · 심재철 · 김정권 · 권오을 · 이주영 · 김성조 · 권경석 · 이한구 의원 발의)

백제왕궁체험도시 복원 ·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007. 11. 9 조배숙 · 한병도 · 김종률 · 윤원호 · 김동철 · 강혜숙 · 유기홍 · 최성 · 김우남 · 지병문 · 김형주 · 서재관 · 이상경 · 이경숙 · 이은영 · 배기선 · 장향숙 · 유재건 · 문희상 · 이미경 · 김희선 · 심재덕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